

지정토론문

박 재 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I. 현황과 문제점

1. Aporia

- “네가 언론이라는 신성한 권력에 짓밟힌 약자의 눈물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의 고통이 작을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그렇다고 악의적인 보도를 막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언론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¹⁾

2. 우리의 논의와 입법²⁾

가. 제도도입 전 논의 경과

- 국내에서 1980년대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됨
- 1999. 2. 법무부 민법(재산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면서 2000년대에 그 논의가 본격화됨
- 특히 2004. 7.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쟁점에 대

1) 김재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 : 특히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합리적인 제도인가?”,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2012), 463

2)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176 이하 참조

한 추가검토를 거친 후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님

- 2009년 설치된 민법 개정위원회에서도 제6분과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장기과제로 분류되어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님

나. 적극론/소극론 일반

(1) 적극론

- 기존의 손해배상제도로는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하지 못하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지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음
- 형사적 제재는 그 성격상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형벌을 부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제재로 기능할 수 있음
- 공적인 제재만으로는 현대사회에서의 각종 권리침해 현상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수범자의 법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2) 소극론

-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계에서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로써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음
- 민사와 형사책임을 준별하고 전보배상을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도 부합하지 않음
-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 될 소지가 있음
-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는 기존의 형사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여 해결할 수 있음

-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음

다. 입법과 그 이후의 논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약 20개의 개별 법률에서 이를 도입하였고(상세는 별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황 참조), 그와 유사한 취지의 여러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음
- 제도 도입 입법 이후 민법을 개정하여 일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정 영역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계속 주장되고 있고, 그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배상액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것인지, 판단의 주체를 배심원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음

3. 쟁점 법률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1인, 2020. 6. 9. 제안)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임
-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 이에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법률안

■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손해배상 책임)

①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제30조³⁾제1항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검토사항

- 1)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2) 언론보도 관련 제도 도입 시 특수한 문제점이 없는가
- 3) 그 밖에 쟁점 법률안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가

3)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II. 검토

1. 제도 도입 자체의 타당성

가.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소극론의 논거가 우수함⁴⁾

(1) 입법례

-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계에서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로서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오래 진행되었지만 이를 받아들인 나라는 거의 없음

⇒ 그 이유를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도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과 그에 따른 예측불가능성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주에 따라 명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부정하거나, 개별 입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주가 적지 아니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작용 때문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음

⇒ 대체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상당히 퇴조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

(2) 위헌 등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 등

-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점이고, 법의 지배는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은 법의 지배 원리에 반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적법절차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행정 또는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적 제재 외에 준형사적(quasi-criminal)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음

⇒ 미국에서도 제도에 관한 수정헌법의 이중처벌 금지, 과잉처벌 금지, 적법

4) 이하 주로 김재형(주 1), 473 이하 참조

절차(due process) 위반 등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오는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들이 있음⁵⁾

- 근대법 이후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엄격히 구분되고 증거절차 및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민사절차의 의하여 처벌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형사절차가 엄격한 증거와 입증을 요구하는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고,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법의 발전이라기보다 법의 퇴보라고 보아야 함

- 배심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일반적인 재량을 법관에게 인정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고, 배심제를 도입하는 경우 편파적이고 일관성 없는 배상액 산정의 위험이 있음

- 제도는 손해배상의 기본원리,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할 만큼 배상한다는 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정신적 손해의 경우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 법리에 의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더구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국가가 아닌 피해자 개인이 차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의식과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의문임

⇒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응징하고 그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님

- 특히 현재와 같이 개별 입법을 통하여 도입할 경우 ① 각 법률마다 인정요건이나 보호정도, 인정절차가 서로 달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도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②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

5)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등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 …”이라고 판시함

시에 대응할 수가 없으며, ③ 불법행위 피해자 간에도 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인 형평성을 기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개별 입법이 없는 분야에서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됨⁶⁾

(3) 실효성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는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악의적으로 소액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일반 예방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효율적으로 일반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함은 물론,⁷⁾⁸⁾ 이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징금·과태료제도 등 형사 및 행정 절차를 정비하여 해결하는 것이 정도이고 소액 다수 피해자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구제할 수 있음
- 이미 도입된 개별 법률에 따른 제도가 실제 활용된 사례도 극히 드뭄⁹⁾
 ⇨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별 법률에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실제 구현되었는가?
-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높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가 상향되는 추세이므로 위자료 제도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으며,¹⁰⁾ 만약 형

6) 김정환(주 2), 228

7) 김재형(주 1), 476

8) 김정환(주 2), 31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어느 정도의 억지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 확실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는데 억지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통계적인 난점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고 함

9) 김정환(주 2), 220 이하는 개별 입법으로 제도 도입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이 문제된 12건의 사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2건에 불과하여 인용률이 그리 높지 않고 인정된 사례 중에도 배상액을 감액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함

10) 대법원이 2016. 10.에 공표한 가해자에게 고의 등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자료를 가중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이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교통사고와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마다 3단계의 위자료 산정방식을 두고 있는데, 고의나 중과실 등 특별한 가중사유가 있으면 기준금액을 2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다시 이 가중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이나 감액 사유를 고려할 수 있음, 상세는 별지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

법, 형사특별법, 행정법 등의 예방과 제재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개선 여지가 없는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선행과제임¹¹⁾

- 거액의 수입료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그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소송비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¹²⁾ 가령 가해자의 주관적 인식 등 그 요건이나 배상액의 결정 등에 관한 법원의 심리부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나. 도입된 제도의 적절한 운영 방안 검토 필요¹³⁾

-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문제제기가 계속 이루어지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된 이상 제도가 목적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그리고 쟁점 법률안과 같이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이 계속 제출되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의 분야와 범위를 검토하여야 함

2. 언론보도 관련 제도 도입 시 문제점¹⁴⁾

-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언론피해를 구제하려고 하는데[New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1964)],¹⁵⁾ 이는 미국에서는 우리 법제하에서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방안으로 인정되는 기사삭제, 반론보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민법, 언론중

한 위자료 산정방안 요지” 참조)

11) 김선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 자료, 법무부(2020), 79

12) 김정환(주 2), 227

13) 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찬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점에 관한 상세는 김정환(주 2), 237 이하 참조

14) 김재형(주 1), 480 이하

15) 우리 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립해 온 ‘현실적 악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등 참조)

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¹⁾ 등이 언론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부정되는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즉 우리나라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앞서 본 다양한 구제수단을 통하여 언론피해를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한다면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고 언론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

-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임

⇒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의 사실적 주장 보도’를 요건으로 하는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고, 이로써 어느 정도 손해의 회복이 이루어짐

- 언론에서 사실을 보도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것이 진위불명인 경우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에도 반론보도의 거부사유(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가 없는 한 반론보도 청구가 인용됨

- 특히 실무상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사건이 다른 개별 법률에 따른 사건에 비하여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남소의 우려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3. 쟁점 법률안¹⁶⁾ 자체의 문제점

- 개정안 제30조의2 제1항의 ‘같은 조 제2항’은 현행 제30조 제2항을 말하고, 이는 2016. 3. 29.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¹⁷⁾와 거의 같음

16) 사건으로, 개정안 제30조의2가 도입되는 경우 이는 현행 제30조 제1, 2항보다 요건사실이 추가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직권으로 개정안 제30조의2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봄

17)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 현행 제30조 제2항이 손해의 범위와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손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 아니하나, ① 같은 항에서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상 손해”를 가르킨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같은 항의 취지가 증명도 완화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는 같은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③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신설의 토대가 된 종래의 대법원 판례도 재산적 손해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취지의 법리를 실시하여 왔음¹⁸⁾

⇒ 즉,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기보다 재산적 손해의 3배 배상으로 규정된 일종의 ‘배액배상제도’¹⁹⁾에 해당함

- 그런데 현행 재판실무상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적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를 구하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재산적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극히 저조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18)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함

19) 징벌적 손해배상과 배액배상 제도는 실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후자의 목적은 위법행위의 발견,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입증 어려움 등을 고려한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이라는 점에서 위법행위의 처벌과 억제가 그 목적인 전자와 차이가 있음[윤석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 자료, 법무부(2020), 10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황 (2020. 9. 현재)

법률명	책임주체	대상 위법행위	주관적 요건	기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	- 부당한 대금결정 - 부당한 위탁취소 - 부당반품/부당감액 - 기술자료 유용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자	차별적 처우	명백한 고의·반복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내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차별적 처우 (기간제법 준용)	(상 등)	(상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 등	신용정보 분실, 도난, 누출, 위·변조, 훼손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전환)	5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 훼손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 훼손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전환)	‘20. 8.부터 개인 정보법·신용 정보법으로 이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급업자	- 구입강제 - 이익제공 강요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 유발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배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본부	- 허위·과장정보제공 - 불공정거래행위 - 보복조치	고의 · 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 · 사업자단체	- 담합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	고의 · 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법률명	책임주체	행위유형	주관적 요건	기타
환경보전법	사업자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환경성질 환 유발	고의·중과실	3배
특허법	특허권·전용 실시권 침해자	고의적인 침해행위	고의	3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 고의·무과실(입증책임 전환)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탁기업	보복행위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침해자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고의	3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자	상품대금감액 금지, 상품 반품금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금지, 보복조치 금지 위반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3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침해행위자	산업기술침해행위	고의	3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또는 지체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	5배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핵심 요지

① 교통사고

-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이하 ‘사망시’로만 기재), 기준금액 1억 원
-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 2억 원을 가중된 기준금액으로 적용

② 대형 재난사고

-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사망시 기준금액 2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4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
- ☞ 불법행위자의 부실 설계·시공·제작에 의한 경우
- ☞ 관리·감독 및 운영상 중대한 주의의무 및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 ☞ 관리·감독기관, 운영·시공업체 등의 결탁·담합·은폐·조작·묵인이 개입된 경우

③ 영리적 불법행위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 또는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준금액 3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6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 영리행위 수단 또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 ☞ 영리행위로 인한 이익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 ☞ 해당 재화·용역의 통상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 ☞ 해당 재화·용역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 및 일반인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가졌던 경우

④ 명예훼손

- 고의·중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신용훼손 시, 「일반피해」의 경우 기준금액 5,000만 원, 「중대피해」의 경우 기준금액 1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2배 가중된 기준금액 적용

☞ 허위사실인 경우
 ☞ 악의적·모해적·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
 ☞ 인지도, 신뢰도, 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및 이를 수단으로 한 경우

※ 일반피해 ☞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단, 아래의 '중대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중대피해 ☞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박탈 또는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사업자의 신용, 상호·상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초래되어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사항]

※ ④ 유형 불법행위에서, 특별 가중사유가 중첩되어 존재하고 훼손된 명예·신용 가치가 매우 커서 특별가중만으로 피해를 도저히 전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가중범위(2배)를 초과하여 가중할 수 있음

※ ①~④ 유형 불법행위 모두, 일반 증액사유 또는 일반 감액사유가 존재할 경우, 50%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 특별 가중사유의 존재 및 일반 증액사유를 고려하여 ① 교통사고의 경우 3억 원, ②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6억 원, ③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9억 원까지 위자료로 인정 가능함
-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액수를 초과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도 있음